

「(아이) 사랑해 적금 특약」 (구 외환은행)

제1조 적용범위

“(아이) 사랑해 적금(구 외환은행, 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적립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14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3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천원 이상 50만원이내입니다.

제6조 적립방법

- ① 고객은 이 예금 가입 시 매월 일정일에 월 적립한도내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매월 월 적립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중에서 적립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제 1 항의 정주기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일에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적립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1천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제 1 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금액은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 1개월 적립한도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자지급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가입기간별 기본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제8조의 우대금리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 ③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8조 우대금리

①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0%의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우대항목	내 용
<p>가족사랑 우대 (최대 연0.6%)</p>	<p>이 적금 가입시 대표가족으로 등록한 가족(1인)의 실적이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6% (항목당 연0.2%)</p> <p>①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거치식예금 또는 적립식예금을 신규한 경우</p> <p>②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KEB하나은행 요구불 계좌를 통한 연금 입금 또는 건당 50만원이상의 급여입금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연금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p> <p>③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KEB하나은행 요구불 계좌를 통한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p> <p>④ 적금 가입후 만기일까지 예금주와 가족이 함께 적금통장을 찍은 사진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는 경우</p>
<p>아이사랑 우대 (최대 연0.4%)</p>	<p>이 적금 가입자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4% (항목당 연0.2%)</p> <p>①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예금주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한 경우</p> <p>② 적금 계약기간의 2/3이상 월 3만원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p> <p>③ 적금 가입시 장래희망(꿈)을 등록한 경우</p>

②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예금주 본인의 입학, 졸업, 해외연수의 사유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가입일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기타

- ① 이 예금 가입 시 “하나멤버스 주거래우대적금” 가입용 우대금리 쿠폰(연0.1%)가 제공됩니다.
- ② 이 예금 가입 시 중앙일보에서 제공하는 교육 캠프 할인서비스가 1년간 제공됩니다.

부칙 (제정)

본 약관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